
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
일부개정훈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토교통부 (주거복지지원과)
연 월 일	2022. 5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보호 종료 전 보호시설 밖에 거주하는 “보호연장아동” 개념이 신설 (『아동복지법』 개정, ‘21.12월)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(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무상지원 지원대상자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에 따라 ‘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’은 만 18세 이전으로,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무상지원 대상을 “만 20세 이전”으로 단일화 (안 제7조)
- 나. 소년소녀가정 및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% 인하하여 적용한 기존 규정에서 지원대상자를 “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”로 명확화 (안 제7조)
- 다. 제1호, 제2호 이외의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용 적용을 명확화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의1을 제6호의2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”를 “20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”을 “보호종료아동(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인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(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”을 “제1호, 제2호 이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조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6의1.</u> (생략)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제7조(지원조건)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다.</p> <p>1. 지원대상자가 만 <u>20세</u> <u>이전</u> <u>이거나</u> <u>보호조치가 종료되기</u> <u>이전</u>까지는 무상 지원</p> <p>2. 지원대상자가 <u>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</u> <u>되거나</u> <u>해당 시설에서 퇴소한</u> <u>지 5년</u>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% 인하하여 적용</p> <p>3. <u>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</u> <u>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</u> <u>해당</u> <u>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</u>이 <u>지</u> <u>난</u>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</u> (현행 제6호의1과 같음)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조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20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보호종료아동(보</u> <u>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</u> <u>퇴소예정자 포함)인 경우 전</u> <u>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</u> <u>(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)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<u>제1호, 제2호 이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